

헌법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조 (임무)

1. 본회는 법규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현의할 수 있다.
2. 총회가 개정하기로 의결한 법규의 조문을 정리한다.
3. 총회 폐회 기간 중 법규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
4. 총회가 연구를 위임하면 그 결과를 법규 개정안은 현의하고, 기타 안건은 보고서로 제출한다.

제2장 조 직

제3조 (조직)

본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가 선정하는 노회별 각 1인씩, 여성위원 1인으로 하며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.

제4조 (위원)

본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조별로 3반으로 나눈다. 총회 후 정기회부터 기산한다.

제5조 (임원)

본회는 정기회에서 위원장 1인, 서기 1인의 임원을 투표로 선임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(회의)

본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한다.

제7조 (개회성수 및 의결정족수)

본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요하며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 (서면결의)

본회는 필요에 따라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 단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 (유권해석)

본회의 법규 해석은 회의 결의로만 한다.

제10조 (분과위원)

본회는 필요한 연구를 위해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11조 (개정)

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1976년 9월 제60회 총회 제정
-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
-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
- 1999년 9월 제84회 총회 개정
-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
-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
-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
-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